

#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10월 5일.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10월15일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경제과장 석명준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제도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,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며, 경쟁 제한적 행정규제 폐지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케함으로서 대행업자간 자율경쟁체제 전환(안 제7조)
-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군수가 지정케 함으로서 허가사항을 지정으로 변경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정비(안 제8조)
-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

- 자격 검정시험 폐지(안 제8조)
-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 수수료를 정비하여 공사비 산출방법 및 공사비를 절감(안 제10조, 안 제36조)
  - 32mm구경의 계량기 신설에 따른 시설분담금 부과기준과 급수 장치 손료를 추가(안 제12조)
  -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요율을 적용(별표 3)

### **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**

- 본 개정안은 수도법에 의거 시장·군수가 시행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 및 규칙의 행정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 및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시(맑은물 58440-814)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자구등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**

**5. 토론요지 : 없 음**

**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**

**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붙 임 :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. 끝 .